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5항 신설, 제110조제1호).
-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9항 신설, 제114조제1호).

II. 검토의견

개정안과 관련하여, 시간 단위 유급휴가 사용을 규정한 안 제60조제5항의 신설¹⁾에 따라 현행 제6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변경하게 되는바, 제61조에서 현행 제60조제7항(안 제60조제8항)을 인용한 부분을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용자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면서 현행 제60조제5항(안 제60조제6항)을 인용한 부분을 개정안에 맞추어 변경하기 위하여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²⁾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수정의견]

개 정 안	수정의견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1조(시행일)</u>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6조제2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4항·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u>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세 진)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